

서울시-대한건축사협회 업무협약서

서울특별시(이하“서울시”라 한다.)와 대한건축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는 「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(이하“UIA 2017 서울대회”라 한다.)」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서울시의 건축문화를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UIA 2017 서울대회」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회 간의 역할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‘UIA 2017 서울대회’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사업내용)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서울국제건축영화제」를 통한 국내외 홍보
2. 「UIA 2017 서울대회」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내외 홍보
3. 건축문화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4. 기타 서울시가 「UIA 2017 서울대회」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

제3조(사업계획) ① “협회”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“서울시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“협회”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“서울시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(사업비 집행 및 관리) ① “협회”는 사업계획서, 사업비집행계획서,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첨부하여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.
② “협회”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,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③ “협회”는 승인받은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, 「지방재정법」,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, 「서울특별시재무회계 규칙」,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리·집행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보조금 정산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.
④ “협회”는 “서울시”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인건비, 사무실 운영비, 회의에 따른 수당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.





⑤ “협회”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.

1.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·도서벽지 등으로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
2. 출장 현지에서 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

⑥ “협회”는 보조금의 관리·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,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비 정산 및 반환) ① “협회”는 제3조에 의한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 종료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“서울시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정산보고서에는 카드결제전표, 세금계산서, 계좌입금증 등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“협회”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협약목적과 내용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와 집행잔액, 예금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.



제6조(지도·감독) ① “서울시”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협약의 이행, 사업비 집행 실태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“협회”를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“협회”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(계산서,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)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“서울시”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“협회”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,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“서울시”는 사업과 관련한 “협회”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⑤ “협회”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“서울시”의 지도·감독에 적극 협조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.

제7조(민·형사상 책임 등) ① “협회”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



하여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 다만, “대한건축사협회”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“협회”의 귀책사유로 “서울시”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또는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“대한건축사협회”는 “서울시”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지) ① “서울시” 또는 “협회”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“협회”가 해지를 요구하는 때에는 인계일 까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“서울시”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협회”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

2. “서울시”가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
3.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

④ “서울시”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“협회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“협회”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“서울시”에 청구할 수 없다.

제9조(협약의 해석·변경 등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의한다.

제10조(협약체 구성) 본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본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비밀유지) ‘협회’는 본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협약 이행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,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협약의 효력) ① 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「UIA 2017 서울대회」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·사고가 종료될 때까지,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, 지도·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·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
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



통을 작성하여 “서울시”와 “협회”가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8월 일



서울특별시
시장 박원순



대한건축사협회
회장 조충기



1997

1998

1999